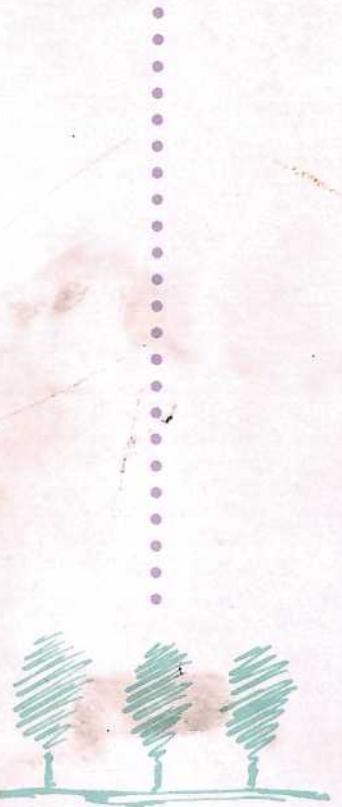


# 인권학술소식

합본Ⅱ호

(제101호~200호)



1994. 10

인권운동사랑방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인권학술소식  
1994. 10

제101호~200호

인권정보자료실  
R1.1.2

인권학술소식  
1994. 10

# 인권하루소식

합본 II

(101호 - 200호)

1994. 10.

인권운동사랑방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 인권하루소식

합본 II 색인

(제101호 - 제200호)

# 암울한 우리 시대에 단비를 재촉하는 진실한 사람들의 기도

함 세 웅 / 신부

이상기류 탓인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다. 더구나 극심한 가뭄으로 논바닥이 갈라지고 밭이 타고 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도시권의 내가 어찌 감히 말할 수 있으랴. 다만 농민들의 마음으로 다가가 한줄기의 소낙비를 그려본다. 아니, 폭풍우를 동반하는 태풍이라도 불어왔으면 하는 바램도 지녀본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물을 고대했으면 태풍이라도 바라겠는가. 태풍을 바라는 이때의 마음은 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며 소원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또 다른 이상기류가 흐른다. 냉전시대의 기류, 미움과 증오, 갈등과 마찰, 흑백 논리의 위험한 기류가 휘몰아친다. 군부독재의 통치논리였던 반공·공안세력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리고 있다. 독재시대의 잔재, 인권탄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우선 한달여 동안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새롭게 되새겨 보자. 북한과 미국의 핵 문제로 외교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6월 초순, 중순에는 전쟁이 방금 일어나는 듯한 무서운 분위기였다. 정부 스스로 비상식량을 마련하라고 권고까지 했으니 그 불안감이란 대단했다. 그런데 다행히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그 이후 남북

# 국제화와 인권운동의 과제

오재식 / 크리스챤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 1. 인권과 세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우리는 모두 통일의 문턱에 들어선 기분으로 자못 흥분된 기분이었다. 전쟁불안에서 평화통일에로의 급선회는 그야말로 극전인 변화였다. 그리고 남북 실무협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는 놀란 기분으로 아쉬움을 갖게 되었다. 어쨌든 북한이 내부적으로 안정되어 남북대화가 빨리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조문파동” 시비로 엉뚱하게 길을 빗겨나가 이제는 온통 북한체제 성토, 김일성 전쟁주범 확인 등으로 법석을 떨고 있다. 게다가 박홍 신부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독재치하에서 거짓과 왜곡을 일삼아오던 언론들이 또 국민들을 가치혼란으로 몰아 넣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슬픈 일이다. 이상기류 속에 여전히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며 세상 한 가운데에서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바로 암울한 우리 시대에 단비를 재촉하는 진실한 사람들의 기도며 노력이다.

하느님,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1994. 7.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46년이 되었다. 전쟁이란 무대에서 자행된 인간의 추잡하고 포악스런 동물성에 대한 자책과 무고하게 희생을 당한 수천만 영령들에 대해 명복을 비는, 살아남은 자들의 기도가 그 선언에 담겨 있었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각오가 문명사회의 명예를 걸고 선포되었다. 그로부터 반세기, 세대가 바뀌기를 거듭하고 권력의 변천에 따른 역사의 해석도 변해서 인권에 대한 생각과 다짐이 그것을 선포했을 때와 같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다.

우선 동서의 냉전체제 들입은 ‘세계인권선언’의 세계성을 약화시켰다. 세계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실체로 인식되었다. 또 그 세계들은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보다는 대립적인 자세를 갖게되고 거기에 따르는 긴장이 고조되어 갔다. 따라서 인권의 가치는 평화에 다음가는 것으로 낮춰서 생각하게 되었다. 동서의 대립적 이념과 기구를 주축으로 한 냉정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긴장을 완화시켜야 하고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수립해 가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런 과제를 위해 과거 인권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는 정치적 도구로까지 쓰이게 되었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은 상대방 세계의 신빙성을 추락시키는 진영의 특정 국가가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인권유린을 저질러도 이를 관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인권은 냉전의 포로였다. 냉전하, 각 진영의 이념체계는 ‘세계’를 그리는 틀이요, 그 틀을 지탱하는 체제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다.

냉전의 동서진영과 또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비동맹국가군의 공간으로 세계는 적어도 세 개로 갈라져 있었다.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과 그 가치도 각각 세 개의 세계관에 종속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계는 상대화되어 있었고 세계의 이름으로 인권의 유린을 자행하는 일이 빈번했다. 인류를 핵전쟁의 공포로부터 구출해야 한다는 평화운동이 인권보다 우선했다.

## 2. 인권과 국가

인류를 “공포와 무지와 빈곤으로부터 구출한다”는 것은 전후의 국제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 그리고 강대국들의 정치적 구호였고 또 활동의 도덕적 명분이었다. 1960년 국제연합이 경제개발 10년계획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명분은 뚜렷하게 살아있었다. 개발연대(年代)는 세계 금융기구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를 중축으로 삼고 각 회원국가가 담당자가 되어서 각종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방대한 규모의 세계적인 사업들이 앞서 말한 도덕적 명분 아래서 진행되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이렇게 숭고한 가치와 명분의 담지자들이 되었다. 마침내 경제적 개발만이 인류를 빙곤과 무지에서 구출할 수 있다는 환각이 생기고 나아가 경제개발이 인류의 가장 유품가는 가치로 둔갑하게 되었다.

인권은 다시 경제개발에 그 보편성을 내주고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유보될 수도 있는 종속적인 것으로 낮아졌다. 세계적 명분이 있는 사업을 담당한 국가는 그것 자체가 보편적 가치의 담지자로 자처해서 세계가 국가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세계는 국가들의 의지의 연장선상에 있고 또 그 세계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국가는 세계를 국내법의 테두리에 담으려고 했다. 인권을 비롯한 평화,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들은 그것들이 표방한 세계와 함께 '국가'의 노예가 되었다. 국가의 의지와 시책에 있어서는 인권의 주장은 관용되지 않았다. 또 국가가 추진하는 경제개발이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을 무시해도 이를 제재할 힘이 따로 없었다. 아직도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인권의 신장이 경제개발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그 고집을 국가의 주권행사라는 명분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 3. 국제화와 세계화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둘러싼 역사적 공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와 국가는 계속해서 긴장관계에 있어 왔다. 국제연합과 같이 국가들이 모여서 국제기구를 형성하고 국가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틀로서 '세계'를 생각하여 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도모하려는 계획이 여러번 시도되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국가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세계'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고 저항해왔다. 아직도 국제사회에는 '세계'를 키워가려는 의지와 그것을 지탱하는 법률적 집행력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제화가 곧 세계화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또 '세계'는 국가들의 재량에 의해서 아직도 좌우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권역사의 전부는 아니다. 인권은 국가들의 의지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과 집단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투쟁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1966년 국제연합이 채택한 인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같은 인권규약은 경제개발연대를 반쯤 지난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서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극히 기본적인 질문에서 나온 것이다. 개발연대의 경제계획 사업들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고, 또 국가의 운영이 '세계'를 담보로 국민에 대해서 시혜적이며 전제적인 통치를 펼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국가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은 결국 개발의 대상이 되고 국가경제의 성장이 개발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

국가권력들의 전횡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집단들의 끈질긴 저항과 고발은 70년대를 통하여 국제연합으로 하여금 인간의 발전권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인간은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자기와 자기 집단의 개발과 발전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인간은 이 권리의 주체다. 이것은 국가나 국제기구로부터 선물받은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재확인된 것이다. 국제연합은 제2차 개발연대를 통해서 개발사업의 시행착오들을 많이 보강해 갈 수 있었으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발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한 것이다. 국제연합으로 하여금 인간의 발전권을 결의하게 한 것은 국가들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들이었다. 인권운동은 다시 국가의 벽을

뚫고 '세계'의 지평을 넓혔다.

인권이 당면한 또 다른 벽은 서구파 세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개인에 대한 철학적 집착이었다.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인을 세우고 그런 개인을 기초로 해서 사회제도와 조직의 틀을 짠 서구파 사회의 발달은 근대 사회의 표본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에 맞물려서 인권에 대한 생각도 개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개인의 시민적 자유권이 인권의 기본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인권의 개인중심적인 이해는 60년대 아래의 역사적인 경험에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최근 30여년간에 지구촌의 사람들은 훨씬 더 빈번하게 서로 접촉하게 되었고 통신과 교통 등의 발달로 방대한 정보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접촉과 이해의 범위가 넓혀질수록 인권의 문제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편견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특정한 사회집단은 다른 집단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한 문화집단이 다른 문화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한다. 이런 밀바탕의 심정적·정신적인 차별의식이 정치, 경제의 제도와 관행으로 나타나서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차별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특정집단에 속했다는 것으로 받는 인권침해와 불이익은 전통적인 개인의 시민적 자유권이란 틀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든 것이다. 인종차별과 같은 것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국제연합은 1975년부터 10년간을 국제 여성의 연대로 정했고, 79년을 국제 아동의 해, 81년을 국제 장애자의 해, 92년을 국제 원주민(소수자)의 해로 정해서 특정집단의 집단적 권리의 일깨우는 운동을 주도했다. 1986년에 발표된 '인간의 개발의 권리에 관한 선언'은 인권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생존권, 환경권 등의 개념이 더 도출되었다. 이것은 냉전체제의 장벽들이나 국민국가들의 국경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발전이고 인류공통의 보편성의 시야가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 4. 냉전의 종식과 인권

냉전체제가 끝난 후에 우리가 허망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정치적인 가공물(架空物)이었다는 것이다. 냉전체제는 전세계의 인류를 인질로 잡았고 인류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것보다는 방법론적인 것을 가지고 써름한 것이었다. 우리는 적어도 과거의 반세기 동안을 이 방법론적인 것을 가지고 탕진했다. 전후에 나타났던 꿈을 사라지고 세계를 새롭게 만들려던 희망과 의지는 편당의 시샘으로 소모되었다. 하나로 보이던 세계는 조각나고 나라와 민족들은 다시 갈라져서 적대관계로 치달아 왔다. 이 소모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인권이 이념이나 제도나 국가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가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었다. 출신성분이나 소속 문화권이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역사에 관계없이 아무도 반론할 수 없는 궁극적인 것이 인권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과 사업의 목적이다.

둘째로 세계가 갈라져 있다는 것과 또 갈라져 있는 것이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위적인 집단 사이의 장애와 장벽들은 본래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꿀 수 있고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다. 아직도 많은 국제기구들이 '세계'를 평계삼아 특정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우선하는 일이 많다. 물론 이런 일들은 모처럼 보이기 시작한 세계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전 세대에서는 당연하고 정당한 행동이었던 그런 작태가 이제는 역사의 큰 흐름에 거슬리는 반동으로 낙인 찍히게 되어가고 있다.

세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국민국가의 힘이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정보, 교통 등등 여러 분야에 국경은 무의미해지기 시작했고, 세계적 규모의 난민문제와 경제의 바람을 탄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국경안의 법률체계만 가지고는 대처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들간의 광장이 새로 떠오르는 세계를 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말은 국제화나 국제사회가 자동적으로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짚어질 담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인류의 위대한 꿈인 하나의 세계를 건설해 갈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은 더 국가 안에서 국가로 하여금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최상의 길일 것이다.

## 5. 인권과 시민연대

환경과 평화와 같이 어떤 문제가 세계화되면 될수록 지역이나 시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례다. 또 문제가 추상화되고 문화적인 차원으로 확산되면 문제의 주체가 잡히지 않아서 한 나라 안에 있는 시민단체로서는 추적하기도 힘들고 그 정체를 가려내기도 어렵게 된다. 이 점에서는 인권의 문제도 비슷한 딜레마를 갖는다. 많은 개인의 경우 인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는 가해자가 분명해서 원인에 접근하기가 쉽지만 그런 가해행위가 국가의 이름으로나 이념이나 국가적 또는 국제적 명분으로 행해졌을 때는 그 원인에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와 인권과 또 논쟁을 동원해야 한다. 더구나 집단의 생존권, 자결권과 같이 그 보편성이 널리 인정을 받으면서도 특정 국가의 국내법이나 정치적 배려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우리 세계에는 이런 차원의 시비를 가리는 장치가 없다. 고작해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한 하위부서로 설정된 인권위원회 정도다. 그러나 그 위원회도 인력이나 예산면에서 볼 때 세계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어림도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시민연대가 새 질서와 권위의 공백기간에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만들고 키워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을 위해 이바지한다는 것은 아직도 요원한 이야기다. 우리 나라의 경우, 많은 시민단체들의 역사가 아직 짧아서 개체단체의 독자성과 업적과 이해관계를 키우고 지키는 것이 고작이고 그런 개별적 울타리들을 넘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않다고 본다. 가령 환경운동의 경우 많은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단체간의 조정과 역할분담이 아직 미흡한 것 같다. 또 각 언론사들은 이런 시민운동들을 육성해 주는데 역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각자가 다투어서 환경운동을 벌리고 있고 각자의 조직과 동원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언론사들은 오히려 시민단체들과 경쟁상대에 있다고 하겠다. 자원봉사를 강조하고, 그린스카웃을 조직하여 생강을 지키는 운동들이 다 중요한 일이지마는 그런 일은 시민단체들의 몫이어야 하고 언론사들은 환경을 위한 나라정책, 경제정책, 국제관계의 재정립과 같은 분야에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시민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한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은 인권운동에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다. 그 하나는 잘못을 고발하는 일(to denounce)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계를 내보이는 일(to announce)이다. 잘못을 고발하고 책벌하고 희생자를 보호-회복시키는 일은 우리 나라의 인권단체들이 많이 해온 것으로서 원인제공자와 주체가 뚜렷해서 일하기가 쉽다. 또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은 희생자를 연대, 잘못을 규탄하는 연대가 쉽고 또 많이 경험해 온 일이다.

그런데 새로운 가치를 드러내고 그것의 타협할 수 없는 기본성을 강조하는 일을 위한 연대를 만들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고발의 경우에는 상식적인 차원의 인도적 분노만으로도 연대가 되지만 가치를 위한 연대에는 설득과 납득을 넘어서는 공동의 신념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 양쪽이 더 세계적 연대를 필요로 하지만 후자가 더욱 그렇다. 세계적 연대를 꾀하는 데는 크게 두어 가지의 난관이 있다. 첫째는 세계라 하지만 인권문제를 그 본래적인 가치를 위해서 다룰 수 있는 권위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국제기구를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들, 법률가들의 활동, 국제사면위원회 등이 두드러진 기관들이고 나머지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주변의 비정부단체들의 로비활동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인권단체들이 월

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계연대를 키워가는 일에 공헌해야 할 차례가 되었다. 특별히 궁극적 가치 또는 목적가치로서의 인권을 위한 연대에는 우리 운동들이 아직도 세계의 많은 사례들을 배워야 하고 또 그런 사례들에 입각한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세계적 연대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나 세계 각 나라 각처의 인권운동체들과 직접 연대를 맺는 것도 바람직하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연대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일 경우, 언제나 희생자의 편에 선다는 불문율을 지키는 것이다. 가치의 연대일 경우에는 특정사례가 보편적 가치를 보강하는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인데 그때에는 보편성 때문에 특수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계연대의 둘째 난관은 인권과 '국가이익'의 갈등이다. 한 국가안에서 공공기관이 가해자인 경우 희생을 당한 개인이나 집단을 호소할 길이 없다. 그래서 국경 밖으로 나가 국제사회의 상식적인 규범과 기준,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의 틀을 기초로해서 인도적이고 도덕적인 압력을 가해자나 기관에 가하는 것이다. 이럴 때 생기는 문제가 그런 행동이 '국가이익'을 손상시킨다는 반론이다. 그러므로 세계연대는 다시 국내의 토론을 유발한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이익'에 대한 국내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한참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떠들고 있는 국제화의 허구성을 인권단체들은 간파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 기본 보편성, 그 목적가치성을 무시한 경제행위는 지구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이 원칙을 무시하는 우리의 대외관계나 대외 경제행위는 우리를 해외에서 가해자로 만들 것이고 나아가 세계에서 고립시킬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는 데도 인권단체들의 막중한 책임과 과제가 있다고 본다.